

定 款

제 정 : 2007.08.31.

개 정 : 2007.09.16.

: 2007.12.18.

: 2008.02.15.

: 2008.02.27.

: 2009.03.23.

: 2011.03.17.

: 2013.03.26.

: 2018.08.27.

: 2019.03.29.

: 2020.03.27.

: 2020.06.15.

: 2021.03.31.

: 2025.03.25.

: 2026.03.26.

에어부산 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에어부산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ir Busan Co., Ltd(약호 Air Busan 이라 칭한다)"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항공운송업
2. 항공기취급업
3. 항공기사용 사업
4. 항공기 및 기기류 재생사업
5. 호텔업
6. 기내식 제조 판매 및 기내용품 판매업
7. 항공기 내 면세물품 판매업
8. 임대업(항공기, 부동산, 운수장비, 운수부대장비 및 전산통신장비 등)
9. 정보처리 정보검색 및 정보통신 관련 업무의 개발 판매의 기술용역, 부가통신사업, 특정 통신사업 및 대리점업
10. 항공 관련 의료업
11. 운송 대리점업
12. 여행상품 판매업

13. 면세물품 및 토산품 판매업
14. 통신판매업
15. 관광사업
16. 신용판매업
17. 상품 판매업
18. 리무진버스 사업
19. 문화 사업
20. 복합운송주선업
21. 항공기를 이용한 자원 조사 및 각종 기술용역업
22. 항공에 관련되는 위탁업 및 대리업
23.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24. 통관업
25. 각종接客 서비스업
26. 관광 편의 시설업
27. 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28. 유람선 운항사업
29. 물품 포장업
30. 준비된 식사와 면세품과 관련 용역을 항공기에 공급하고 인도하는 행위
31. 공항 식당 및 관련 시설을 영위하는 행위
32. 공중을 위한 일반 급식(케이타링)업을 영위하는 행위
33. 전자상거래업
34. 이비즈니스업
35. 벤처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36. 항공기 정비업

37. 교육사업
38. 사업 지원 서비스업
39. 보험대리점업
40. 항공 화물 하역업
41. 항공용 기기의 제조 및 수리업
42. 세탁업
43. 일반 여행업
44.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
45. 지상조업
46. 항공기 지상조업용 장비 제작, 정비 및 점검업
47. 크루즈 운영 및 부대 되는 사업
48. 상품권 매매업
49. 상품중개업
50. 의료기기 판매업
51.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52.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53. 위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업무, 사항, 사업 및 활동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irbusa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수권주식 및 발행 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4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8,000 주(1 주의 금액 5,000 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0 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 또는 상환)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 또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⑧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⑨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월 이상 10 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⑩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⑪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⑫ 상환 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 ⑬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발행예정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의 전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⑭ 전환비율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⑮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월 이상 20 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6 보통주식으로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전환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 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감사를 둘 경우)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 후 7년의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의 2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3 년 이상 근무 후 7 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4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 15 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 문서로 작성한다.

제 16 조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의 4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의 5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8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소집 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소집 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일의 2 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소집지와 개최 방식)

-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 23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6 조 (의결권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의결권 대리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30 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 선임 된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5 조의 2 (이사의 책임 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감사를 둘 경우)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감사를 둘 경우)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감사를 둘 경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독립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2. 감사 후보 추천 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내부거래 위원회
5. 감사인 선임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6 조 내지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1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장 1 인과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2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 43 조 (감사 및 감사위원회)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4 조 (감사의 수)

회사는 감사를 둘 경우 이 회사의 감사는 1 명 이상으로 한다. 그중 1 명은 상근감사로 한다.

제 45 조 (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 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 34 조 제 3 항 및 제 35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 6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50 조 (감사의 책임 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감사의 책임을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1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⑦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 6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3 조 (감사록)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54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 447 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 혹은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 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 6 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9 조 (분기 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 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 배당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 실현이익
 6. 분기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 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 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 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제 9 조 2 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 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60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9. 16. 개정)

이 정관은 2007년 9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12.18. 개정)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8. 2. 15. 개정)

이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8. 2. 27. 개정)

이 정관은 2008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9. 3. 23. 개정)

이 정관은 2009년 3월 23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7. 개정)

이 정관은 2011년 3월 1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6. 개정)

이 정관은 2013년 3월 26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7. 개정)

이 정관은 2018년 8월 2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9.3.29. 개정)

이 정관은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14조, 15조, 17조의5, 18조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7. 개정)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5. 개정)

이 정관은 2020년 6월 15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1. 3. 31. 개정)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5. 3. 25. 개정)

이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6. 3.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5조의 2, 제39조, 제50조, 제51조의 2와 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07.22>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